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330
----------	------

제출일자 : 2023. 6. 8.
제출자 : 달성군



1. 제안이유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달성군 군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고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 및 국기선양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나. 국기의 게양일(안 제3조)
- 다. 국기선양 사업 및 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가로기의 게양(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라. 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의 설치·운영(안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1)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제10조, 제12조,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조
 - (2)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6조
 -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제1조~제7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입법예고(2023. 4. 28. ~ 5. 19.) 결과 :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 (7)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달성군 군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고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 및 국기선양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달성군민의 날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결로 정한 날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 가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국기선양에 힘써야 한다.

제4조(국기선양 사업)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 국기를 대상으로 한 각종 행사의 개최
2. 국기 게양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군수는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기는 세대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달성군청(이하“군청”이라 한다)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
 2. 그 밖에 군수가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군수는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대회의 시상품이나 방문 기념품등으로 국기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국기 계양을 장려하기 위해 국기선양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가로기의 계양) ① 군수는 국기선양을 위하여 주요도로의 일정 부분을 가로기 상시계양구간으로 정하여 가로기를 상시 계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의 설치·운영) 군수는 군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군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판매대와 국기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제10조(국기의 관리 등) ①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 등 각종 행사에서 수기(手旗)를 사용하는 경우 행사를 주최하는 자는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④국기를 영구(靈柩)에 덮을 때에는 국기가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영구와 함께 매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국기를 영구에 덮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 국가는 국기선양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

①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지원한다.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6조(국기수거함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원실, 주민센터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오염·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국기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제작·관리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나 드높임에 숭선 수범한 경우(개정 2020.12.30.)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